

소음·진동규제법 해설



千 環 弼
(환경처, 소음·진동과장)

목 차

- 1. 서언
- 2. 법 제정의 필요성
- 3. 법 체계도
- 4. 주요 내용
 - 가. 소음·진동 규제범위 확대 (제2조)
 -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범위축소 (제2조 제3호)
 - 다. 위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확보(제19조)
 - 라. 배출시설 관리인의 권한강화 (제21조)
 - 마. 건설 소음·진동의 규제 (제23조)
 - 바. 폭약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 (제27조)
 - 사.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 (제28조)
 - 아. 제작차의 소음규제 (제32조)
 - 자. 운행차의 소음규제 (제36조)
 - 차. 생활 소음의 규제 (제39조)
 - 카. 항공기 소음의 규제
- 5. 기대 효과
- 6. 결언

1. 서언

구약성서 에스겔서에 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을 겪게되는 기록이 있다. 물론 앗시리아가 갑자기 망하는 것을 은유법으로 표현한 사건이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음과 진동은 인류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하며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공해요인으로서 문제가 되어왔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저감 방안은 크게 발전되거나 개발되지 못한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다.

그 원인으로서의 소음과 진동은 발생과 전달과정이 물리적인상으로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이 처리물질을 남겨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해 버리며 다른 공해에 비하여 극히 국소적이거나 그 발생원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방지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단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법 제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소음·진동문제가 어느곳이나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빈번한 건설공사장 소음·진동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등 국민생활 불편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정은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환경보전법은 소음·진동을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이질적인 사항과 혼합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염원관리 업무에 능동적대처가 곤란하며 시급한 민생안정의 해결과,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소음·진동 규제법을 개별법

으로 제정 정비하게 되었다.

3. 법 체계도 <도표 참조>

4.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규제범위 확대 (제2조)

환경보전법에서는 소음·진동을 기계 기구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강한 흔들림으로 정의하였으나 금번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설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강한 흔들림까지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공사장, 폭약, 이동확성기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출원에 대하여도 규제하게 됨으로서 도시소음저감과 정은지역조성 및 많은 민원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범위축소(제2조 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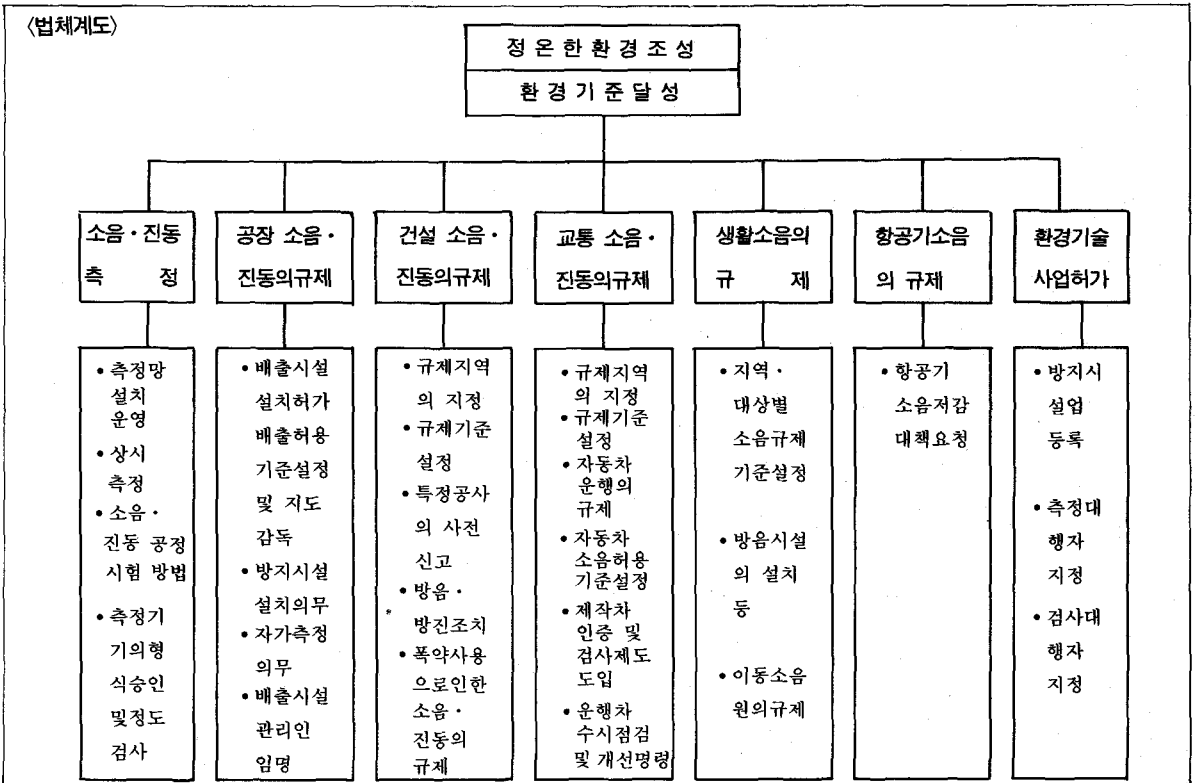
종전에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소음·진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 규정함으로써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종전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모든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하고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는 실제로 소음·진동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적은 빌딩·아파트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허가 및 관리등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민원업무의 대폭완화 및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

다. 위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수단 확보(제19조)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수단이 확보하게 됨.

라. 배출시설관리인의 권한강화(제21조)

배출시설관리인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시설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배



출시설과 방시설을 정상가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배출시설관리인의 권한을 강화하여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마. 건설소음·진동의 규제(제23조)

항타기 항발기등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부터 정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할 때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폭약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규제(제27조)

채석장, 각종공사장등에서 사용하는 폭약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부터 주거환경의 정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약사용시간, 사용회수, 사용량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사.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제28조)

자동차 도로 철도등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음시설설치 자동차운행의 규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제작차의 소음규제(제32조)

저소음자동차를 생산 보급토록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로 하여금 제작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토록 하고 환경처장관은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관련 연구기관



▲소음·진동규제법의 정비로 도시소음저감, 정온지역조성 및 민원해소등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자. 운행차의 소음규제(제36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토록 하고 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이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생활소음의 규제(제39조)

주거환경에 산재된 각종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규제지역 및 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등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카. 항공기 소음의 규제

환경처장관은 항공기소음 측정결과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항공기소음의 감소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 기대효과

그동안 국민생활의 불편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기분야의 일부 항목으로

취급되던 소음·진동분야가 이제는 독립된 분야로서 그 위치와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환경보전법에서 7개 조항으로 소음·진동분야를 모두 규제하여 오던 것을 9장 62개조항으로 대폭 확대개편하게 되었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제고되게 되었다.

법령 내용도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유지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등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축소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편

의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배출시설 관리인의 직무 강화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서 도시소음저감과 정온지역조성 및 민원해소등에 많은 개선이 이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음·진동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도 실용화하기 위하여는 그 적용이 아주 곤란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입체적으로 이동하는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결코 용이한 일

이 아니며 완벽한 법제화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법의 제정작업에서 면밀히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마련한다 해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때만이 조용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이룩될 수 있음을 믿는다. ◻

조직사회를 위한 바른 회의 진행방법

— 이진중 편저〈회의진행과 의사표현〉 —

인간은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상적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의 한 과정으로 인간은 단체 의사를 결정짓는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는 의사결정뿐 아니라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체의 무대를 확보하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여론의 힘과 전체의 의견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결정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회의를 잘못하거나 또는 회의하는 방법이 서투르면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를 이르게 전체를 그르치게도 된다.

즉, 바르고 훌륭한 회의는 매사를 바르고 훌륭한 결과로 이끌어 주는데,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시대와 현재 직장에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의 관리를 위해

서, 회의를 주재하는 지도자는 물론,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도 꼭 읽어야 할 현대인의 지침서이다.

이 책의 중요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 : 말의 기능과 언어의 세계

제 2 장 : 회의 진행과 방법

〈회의운영의 일반적 특성〉 〈회의의 지도력〉 〈회의와 회원〉 〈회의의 준비〉 〈회의진행의 일반적 형식〉 〈동의의 형식과 분류〉

제 3 장 : 회의의 종류와 성공법

〈회사에서의 회의〉 〈일반회의〉 〈국제회의〉

* 회의를 성공시키는 방법

* 부록(각종 회칙과 회의용어 해설)

이 책의 편저자 이진중 한국평



생교육원 원장은 (사)환경교육회 학술위원으로 우리나라 환경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한바 큰 환경인의 한 사람이다.

* 크라운판 320명. 크로스 양장
* 값 6,000원(전국 유명서점에서 판매중이며, 본회를 통해 주문할 때는 값의 10% 할인, 우송해 드림)